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 이유

- 구미의 미래를 이어갈 청소년에게 과학기술의 꿈과 동기부여는 물론, 시민들의 여가 휴식 공간 확보, 관광코스로 활용,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건립하는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관람 및 매표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개관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관람료 · 관람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7조)
- 관람료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변상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대관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대관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대관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대관료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대관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4. 참고사항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구미의 미래를 이어갈 청소년에게 과학기술의 꿈과 동기부여는 물론 시민들의 여가 휴식공간 확보 및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건립하는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 임

○ 주요 내용은

- 관람 및 대표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개관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관람료·관람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7조)
- 관람료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변상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대관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대관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대관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대관료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대관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검토 결과

- 구미의 미래를 이어갈 청소년에게 과학기술의 꿈과 동기를 부여하고 첨단 디지털 전자·IT도시에 걸맞는 과학문화확산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금을 지급받아 건립된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근거하여 위탁관리 등을 규정한 조례안 임
- 조례안 제6조제1항 및 제15조 관련 별표에서 규정한 관람료와 대관료 규정이 타 지역과 비교하여 객관적인 요금이 책정되어 시민들이 경제적인 부담없이 관람할 수 있어 체험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됨
- 더불어, 타 지역 시설과 차별화를 기하여 청소년들에게는 과학체험의 산 교육장이 되고 시민들에게는 여가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아 정주여건 개선에도 일조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관으로 운영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